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467		
최초 등록일	2024.03.27.	최종 등록일	2025.05.12.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동대문매운김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동대문매운김밥>

대표번호	070-4455-0050	팩스번호	없음
가맹사업부서	F & B 사업부	전화번호	070-4455-005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2층 2250호(역삼동)		
홈페이지	동대문매운김밥.com ddm-gimbap.com	이메일	ceo@two1-partners.com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동대문매운김밥」의 연혁
3. 「동대문매운김밥」의 업종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등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Ⅶ.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매운떡볶이

동대문



매운김밥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식회사 동대문매운김밥>의 “「동대문매운김밥」”)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동대문매운김밥」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 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동대문 매운김밥	동대문매운김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2층 2250 호(역삼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4.05.	2024.04.18.	이용범	070-4455-0050	없음
	법인등록번호	110111-8915766	사업자등록번호	743-86-03001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 / 상호	주 소		
임원 (대표이사)	이용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2층 2250 호(역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용범	070-4455-0050	없음
관 계	이름 / 상호	주 소		
임원 (사내이사)	권오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2층 2250 호(역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용범	070-4455-0050	없음

☞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 및 제 11 조 제 1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업명/영업표지	인수일	주 소	대표자
당사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동대문매운김밥 / 동대문매운김밥	2024.04.2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55, 1 층(흥인동)	권오성

☞ 당사는 상기 동대문매운김밥으로부터 2024년 4 월경,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동대문매운김밥	-
상 호	동대문매운김밥 00 점	00 에는 보통 해당 지역명이 표기됨
상표(서비스표)		상표출원번호 : 4020240016202 상표출원일자 : 2024.01.25.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	-----	-----	------	-------

2022년	2024년 사업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2023년	2024년 사업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2024년	3,395	16,022	-12,626	956	-22,646	-22,626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용범	대표이사	2019.12~현재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 준비	경영전반
	권오성	대표	2019.12~2024.04	「동대문매운김밥」 직영점 운영 및 가맹사업 준비	경영전반
		사내이사	2024.04~현재		경영일반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당사	주식회사 동대문매운김밥	동대문매운김밥(20240467)	2024.08~현재	분식 전문점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동대문매운김밥」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본이미지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등록만료일
서비스표		2024.01.25.	4020240016202	주식회사 투엘파트너스	-
권리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상기 지식재산권은 상기 출원인으로부터 사용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상기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중인 상표로서 등록 이전까지 관계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동대문매운김밥」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4년 8월 14일입니다.

2. 「동대문매운김밥」의 연혁

「동대문매운김밥」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동대문매운김밥	동대문매운김밥	권오성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55, 1층(흥인동)
주식회사 동대문매운김밥		이용범	2024.08~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2층 2250호(역삼동)

☞ 당사는 상기 동대문매운김밥으로부터 2024년 4월경,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3. 「동대문매운김밥」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동대문매운김밥	분식	김밥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동대문매운김밥」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동대문매운김밥」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동대문매운김밥」의 전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	1	1	-	1	3	3	-
서울	1	-	1	1	-	1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상기 2023 년까지의 현황은 당사가 가맹사업을 양수하기 이전 개인사업자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입니다.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동대문매운김밥」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해지 ·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2 년	-	-	-	-	-	-
2023 년	-	-	-	-	-	-
2024 년	-	3	-	-	-	3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사업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세부)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2. 12.31.	2023. 12.31.	2024. 12.31.
-	-	-	-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VAT 포함)

당사의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간 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4 년 말 가맹점수	2024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상한		연간 평균 하한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3	미 기재						-
서울	1	해당 없음(5개 미만)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해당 없음(5개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해당 없음(5개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 자료 및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6 개월 미만 운영됨에 따라 산정 가맹점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올, 시공 매뉴얼 준수 정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동대문매운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개)	평균 영업기간(일)
2024	3	71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동대문매운김밥」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대문매운김밥」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간	금액(단위:원/VAT 미포함)	비고
광고선전비	인터넷, SNS 등	2024.01~2024.12	9,543,491	당사 100% 부담
판매촉진비	할인 행사 등	2024.01~2024.12	-	-
합계			9,543,491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동대문매운김밥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등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피해보상보험 대상 아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가.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5,500,0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3,300,000 (1 인당 55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오픈행사 (판촉)비	지점 온라인 마케팅	3,300,000		행사(판촉) 이후 반환 안됨. 단 행사(판촉)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행사(판촉)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상기 개점 전 교육비는 기본 2인의 비용이고 인원 추가 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 상기 오픈행사(판촉)는 당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투엘파트너스가 진행하는 지점 온라인 마케팅
으로서 귀하가 원하는 경우 진행하는 선택사항입니다.

나.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가맹점 운영매뉴얼 제공	면제	양수도 승인 시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3,300,000 (1 인당 55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상기 양수가맹비는 귀하가 기존 가맹점의 계약 잔존기간에 해당(최초 계약기간의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는 양도인으로부터 귀하가 인수)하는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잔존기간이 아닌 새롭게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가맹계약을 원하는 경우 양수가맹비로 신규가맹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 상기 개점 전 교육비는 기본 2인의 비용이고 인원 추가 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 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000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 상기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시 예치 가맹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합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 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잔존기간 양수)
	14,100,000	5,300,000
가맹비	5,500,000	면제
교육비	3,300,000	3,300,000
오픈행사(판촉)비	3,300,000	-
보증금(VAT 해당없음)	2,000,000	2,000,000

☞ 상기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시 예치 가맹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이미 투자된 실비 제외)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금의 70%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33m²(10 평)기준/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비용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금액	3.3m ² 당 금액		
인테리어	V-1의 거래상대방	22,000,000	2,200,000	계약 시 개별 협의	미 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익스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		6,600,000	-		미 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장비 및 집기		25,300,000	-		미 설치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초도물품		5,500,000	-		미 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합 계			59,400,000	5,940,000	3.3 m ² 당 합계 : 금액합계/기준평 수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기준 평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매장의 특성(크기, 위치, 층수, 기존 설비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인테리어는 귀하가 원하는 경우 자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당사로부터 설계, 정보제공,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비용으로 3.3m²(평)당 33 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기본 공사에 해당하며 철거, 공조, 설비(주방 급/배수, 방수 등), 전력승압, 가스공사, 가구, 소방설비, 외부공사, 음향장비(스피커, 오디오 등), 전자기기(POS, 키오스크, CCTV 등) 등은 별도 공사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익스테리어 비용은 기본 공사에 해당하며 측면간판은 별도 공사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필수 가입(귀하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 ⑥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품목의 내역 중 별도로 기재된 부분은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 품목의 공급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8)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계약금)	14,100,000	5,300,000	계약 체결 시
기타 대금	59,400,000	(일시불)	

☞금전 지급 방법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본부	월 330,000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 안됨
개점	수시 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이후 교육비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참조)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시스템사용료 (사용 시 적용)		30,000~40,000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 개선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개선 비용	별첨2 거래 상대방 참조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개선 비용(V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실비로 점포개선 후 반환되지 않음

☞ 귀하는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함)의 2024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차액가맹금이 일부 있으나 모든 가맹점이 6개월 미만 운영됨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용	빈도 및 시기	비고
재고관리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재고 비교 조사 등	수시	가맹점 운영지침(QSC 포함) 및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
회계관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의 작성·유지 실태 조사 등	수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 등'이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점포 이전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면제
-----	----

☞ 상기 갱신비 면제는 한시적인 것으로 향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을 통하여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동대문매운김밥」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매운떡볶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로 품목 구입시 강제/권장/자체조달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강제품목은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하고, 권장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제 3 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 자체조달 품목은 시장에서 제 3 자로부터 구매하고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품목을 말합니다.
- ②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공급가격은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가격으로서 귀하에게 공급되는 품목과 공급가격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동대문매운김밥」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상호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매운떡볶이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동대문매운김밥」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당사는 「동대문매운김밥」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동대문매운김밥」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공한 메뉴 또는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 (별첨 4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구두 경고 및 서면 예고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 및 타사 가맹점 등 사업자	당사가 제공한 메뉴 또는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별첨 4 참조)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용역 판매 불가	구두 경고 및 서면 예고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기타 경쟁관계 사업자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방법	비고
당사가 제공한 메뉴 또는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별첨 4 참조)	별첨 4 참조	전자/서면 방식으로 귀하에게 수시 통보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 6 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의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업종이란 V-7.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V-7.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동대문매운김밥」	해당 없음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당사가 「동대문매운김밥」 과 사업형태가 동일한 업종의 범위 외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

<p>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으로부터 직경 1,000M(반경 500M)를 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그 범위와 모양을 지도로 표시 (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 설정함)</p>	<p>별지에 영업지역 표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p>
---	----------------------------------

☞ 영업지역의 범위와 모양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의 형태 외 삼각형, 사각형, 그 이상의 다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지역의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p>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 또는 이에 준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임직원)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p>	<p>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하고 합의 후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p>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9	6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동대문매운김밥」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1항 및 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 2항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및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 2항 ~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 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조 22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2호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 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의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동대문매운김밥」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대문매운김밥」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V-3-1)과 동일 또는 유사 메뉴를 일반인에게 입점/배달 형태로 제공하는 분식 전문점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동대문매운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09:00 ~ 21:00	월 25일 이상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귀하의 상권/입지, 경쟁 매장 여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2명(조리 1명, 응대/포장 1명)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재량적으로 근무인원 결정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점 운영지침(QSC 포함) 및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사용 시 적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기기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기기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接客 서비스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끝난 후 해당 관리표는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부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 2개월 전)→가맹점 동의→분담금 납입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광고시행→결과통보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판매 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통지(판촉 1개월 전)→가맹점 동의→분담금 납입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분담금 납입→판촉시행→결과통보

☞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당사는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타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 7 조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제 25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또는 관련 법령 상의 위반행위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노출됨으로써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이천만원 (2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 (1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 (300,000 원)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5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및 제 5 항의 손해배상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귀하의 영업기간 동안 당사에게 지불한 직전 3 개월간 월평균 물품대금의 5% 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불하며 이는 제 33 조의 위약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제7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모집 채널	-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중 1. 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및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3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1~3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1~3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15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5~6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0 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 오픈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자발적인 조정을 받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는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중재를 거치기 전에는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중재지는 서울특별시, 중재판정부는 1 인으로 구성하기로 가맹계약을 통하여 합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재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운떡볶이

동대문



매운김밥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기타 비용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간판교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90 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슈퍼바이저, 지역관리자, 배송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의 범위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2. 표준화(Standardization):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메뉴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3.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4.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5.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귀하 자신의 점포에 대한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경영지도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나 귀하가 원하는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시중은행 프랜차이즈론 또는 창업대출 등)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상 지원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정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동대문매운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교육	회사/아이템 소개, 조리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10 일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등 현장교육	실습교육		

2) 개정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동대문매운김밥」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 귀하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당사가 당사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다음과 같은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금 이십이만원 (220,000원)	1인 1일 기준
숙박비, 교통비	실비 처리	-

1.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0일 (50시간)	3,300,000(추가 시 1인당 550,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상기 개점 전 교육비는 기본 2인의 비용이고 인원 추가 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2.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외 1 인(기본 2 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를 타인으로 교육대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현재 「동대문매운김밥」 관련하여 운영 중인 직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 개월, 일)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천원/VAT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 1 재무사항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매운떡볶이

동대문



매운김밥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매운떡볶이

동대문



매운김밥

별첨 2 인테리어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상기 품목은 당사의 가맹사업의 사업전략 변경(메뉴 변경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상품 변경 및 당사 또는 협력업체의 물류배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품목 중 강제 품목은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고, 권장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제 3 자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으며, 자체조달 품목은 귀하가 자체적으로 제 3 자로부터 조달하고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매운떡볶이



별첨 3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매운떡볶이

동대문



매운김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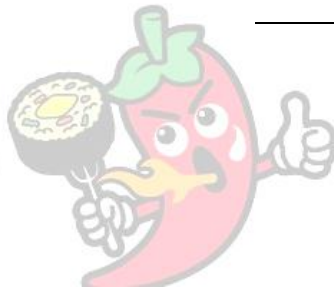
별첨 4 메뉴 및 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메뉴 및 가격은 당사의 가맹사업의 사업전략 변경(메뉴 변경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상품 변경
및 당사 또는 협력업체의 물류배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매운떡볶이

동대문



매운김밥

